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7. 이정임 의원의 5인
- 나. 회 부 일 자 : 2010. 11. 19.
- 다. 상 정 일 자 : 2010. 11. 23.(제177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부록)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꽃임 부위원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제3조, 제4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9조)
-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등의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안 제10조)
- “장애인가족지원 센터”의 보고사항, 시장의 감독권한, 위탁해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가구 월 소득은 182만원으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337만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보호에 따른 불안감과 부담감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심리적·정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미비한 것이 현실임.
- 2010년 우리시의 장애인은 10,932명으로 장애인가정수는 9,000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와 휴식공간 설치운영 등 가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고 함.
- 따라서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국적으로 소수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연간 100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수반¹⁾되는 사항이므로 재원 조달방안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타자치단체의 경우 2010년 본예산 기준으로 함안군청 60,400천원, 양산시청 80,000천원, 창녕군청 60,000천원 서산시청(장애가족지원 프로그램) 27,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됨

장애인 등록 현황

<2010년 10월말 현재>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437	322	759	879	641	1,520	1,445	780	2,225	846	856	1,702	1,383	1,148	2,531	1,421	774	2,195	6,411	4,521	10,932
간	2	1	3	2	1	3	9	1	10	2	0	2	9	6	15	0	0	0	24	9	33
간절	0	0	0	2	0	2	6	2	8	16	12	28	0	0	0	0	0	0	24	14	38
뇌병변	109	95	204	113	120	233	153	100	253	69	55	124	53	29	82	38	16	54	535	415	950
시각	53	64	117	24	16	40	17	28	45	21	30	51	105	54	159	312	188	500	532	380	912
신장	7	6	13	72	66	138	0	0	0	1	0	1	15	11	26	0	0	0	95	83	178
심장	0	1	1	3	4	7	11	10	21	0	0	0	0	1	1	0	0	0	14	16	30
안면	1	0	1	2	0	2	3	0	3	2	2	4	0	0	0	0	0	0	8	2	10
언어	0	0	0	3	5	8	18	8	26	15	5	20	1	0	1	0	0	0	37	18	55
지체성	6	0	6	13	1	14	3	0	3	0	0	0	0	0	0	0	0	0	22	1	23
장루·요루	0	0	0	1	1	2	2	2	4	18	8	26	8	3	11	0	0	0	29	14	43
정신	5	0	5	64	52	116	100	93	193	0	0	0	0	0	0	0	0	0	169	145	314
지력	126	101	227	184	153	337	137	97	234	0	0	0	0	0	0	0	0	0	447	351	798
지체	108	50	158	253	138	391	823	346	1,169	577	644	1,221	1,053	924	1,977	1,012	510	1,522	3,826	2,612	6,438
청각	8	1	9	122	83	205	114	86	200	125	100	225	139	120	259	59	60	119	567	450	1,017
호흡기	12	3	15	21	1	22	49	7	56	0	0	0	0	0	0	0	0	0	82	11	93

* 자료 출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 장애인 세대수 = 장애인수 / 1.2 약 9,110세대

4.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김꽃임 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 질의) 장애인수가 한 1만 932명이고 장애인 가족수는 9천여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도 물론 중요한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 했듯이 우리 장애인가족센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전 구)장애인복지관을 거기로 선정이 됐습니까? (조덕희 위원)

답변) 현재 그 기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질의)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인지 부분만 사용하는 것인지?(조덕희 위원)

답변) 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지상 1층하고 지하공간에 필요한 공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질의) 아동복지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센터 장님하고 또 거기 필요한 인력은 어느정도 되나요? (김꽃임 위원)
답변) 도에 도비지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은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상 하기는 내년도 1회추경에 사업내시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시가 되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센터장하고 거기에서 활동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기타의견)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 위원회를 장애인가족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하시는데 위촉직 위원중에서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이면 제 생각에는 가족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지원에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계시고 노인분도 다양하시니까 이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아동이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아동전문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잘 뽑아주셔서 이 심의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을 100% 다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부. 끝.